

미국 추가관세에 대한 중국의 주요 대응조치

- 이중용도 수출통제품목 추가, 對미국 추가관세 부과 등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2025. 2. 10(월)

① 중국의 주요조치

1.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통제

□ 개요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과 생산기술에 대해 2월 4일부터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허가증’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 (2025. 2. 4, 제10호 공고문)

□ 품목 :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 27개(HS 10단위)

- △텅스텐 관련 품목(19개), △텔루륨 관련 품목(7개), △비스무트 관련 품목(11개), △몰리브덴 관련 품목(1개), △인듐 관련 품목(3개)

* 이번에 발표된 총 품목 수는 HS 10단위 기준 41개 품목이나 이중 HS코드가 중복된 14개를 제외시 총 품목 수는 27개

* 텅스텐 · 텔루륨 · 비스무트 · 몰리브덴 · 인듐 생산기술은 통제코드로 표기

□ 통제내용 :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허가증’ 취득 후 수출 가능

□ 수출 허가증 발급 절차 (흑연, 게르마늄 등 기존 수출통제 품목 절차와 동일)

순서	주체	내용
①	수출자	▶ 성(省)급 상무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수출계약서, 품목설명서, 사용자/용도증명서, 수입자/사용자 현황 자료 등
②	상무부	▶ 수출신청서 접수 후 심사, 법정 기한내 허가 여부 결정,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출시 국무원 비준 필요
③	상무부	▶ 심사 후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허가증(수출 허가증)’ 발급
④	수출자	▶ 해관에 수출 허가증 제출, 통관수속 진행
⑤	해관	▶ 상무부 발급 ‘수출 허가증’ 에 따라 검사, 승인

<2025년 제10호 공고문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

No.	품목	품목명	신규 통제 품목 HS코드		기존 통제 내역	비고
			중복 포함 41개	중복 제거 27개		
1	텅스텐 관련 품목 · 기술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2841801000	2841801000	수출허가증	
2		텅스텐 산화물	2825901200	2825901200	수출허가증	
3			2825901910	2825901910	수출허가증	
4			2825901920	2825901920	-	신규 HS
5			특정 탄화 텅스텐	2849902000	2849902000	수출허가증
6		고체 텅스텐 (텅스텐 함량 97% 이상)	8101940001	8101940001	-	신규 HS
7			8101991001	8101991001	-	신규 HS
8			8101999001	8101999001	-	신규 HS
9		텅스텐-구리 합금 (텅스텐 80% 이상)	8101940001	중복	-	
10			8101991001	중복	-	
11			8101999001	중복	-	
12		텅스텐-은 합금 (텅스텐 함량 80% 이상, 은 함량 2% 이상)	7106919001	7106919001	-	신규 HS
13			7106929001	7106929001	-	신규 HS
14		특정 텅스텐 합금 (텅스텐-니켈-철 합금)	8101940001	중복	-	
15			8101991001	중복	-	
16			8101999001	중복	-	
17		특정 텅스텐 합금 (텅스텐-니켈-동 합금)	8101940001	중복	-	
18			8101991001	중복	-	
19			8101999001	중복	-	
20	텔루륨 관련 품목 · 기술	금속 텔루륨	2804500001	2804500001	-	
21		카드뮴 텔루라이드	2842902000	2842902000	-	
22			3818009021	3818009021	-	신규 HS
23		카드뮴-아연 텔루라이드	2842909025	2842909025	-	
24			3818009021	2852100010	-	신규 HS
25		카드뮴-수은 텔루라이드	2852100010	중복	-	
26	3818009021		중복	-		
27	비스무트 관련 품목 · 기술	특정 비스무트 금속 및 제품	8106101091	8106101091	수출허가증	
28			8106101092	8106101092	수출허가증	
29			8106101099	8106101099	수출허가증	
30			8106109090	8106109090	수출허가증	
31			8106901019	8106901019	수출허가증	
32			8106901029	8106901029	수출허가증	
33			8106901099	8106901099	수출허가증	
34			8106909090	8106909090	수출허가증	
35		비스무트 게르마나이트	2841900041	2841900041	-	신규 HS
36		트리페닐비스무트	2931900032	2931900032	-	
37	트리스(p-에톡시페닐) 비스무트	2931900032	중복	-		
38	몰리브덴 관련 품목 · 기술	몰리브덴 분말 (미사일 제조용)	8102100001	8102100001	-	신규 HS
39	인듐 관련 품목 · 기술	인듐 포스파이드	2853904051	2853904051	-	신규 HS
40		트리메틸인듐	2931900032	중복	-	
41		트리에틸인듐	2931900032	중복	-	

〈중국 정부 입장 * 상무부 대변인 발표(2025. 2. 4)〉

- 희귀금속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 중국은 텅스텐 등 관련 품목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필요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참고 〈수출통제 품목 활용분야〉

- 텅스텐 관련 품목 : 반도체 및 전자 부품의 재료, 화공 및 항공우주, 의료기기 제조
- 텔루륨 관련 품목 : 반도체 소자 등 전자산업, 광학 재료, 화학 촉매
- 비스무트 관련 품목 : 반도체 및 열전소재, 납 대체 무독성 합금, 의약품
- 몰리브덴 관련 품목 : 엔진 부품, 전자제품 등
- 인듐 관련 품목 : 반도체, 전자제품, 항공우주

※ 참고 〈수출 허가증과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허가증 비교〉

구분	수출 허가증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허가증
적용 범위	수출허가증 관리 품목 목록 *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 *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필요서류	1) 수출허가증 신청서 2) 주관부서의 허가서류 3) 수출계약서 4) 수출업자 및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탁대리 협의서> 제출 5) 상무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등	1) 신청인의 법인대표, 주요 경영관리자, 취급인의 신분증명서 2) 핵/생물/미사일 이중용도 등 관련 기술 설명서 또는 검측보고서, 제독이 용이한 화학품의 경우 생산, 경영, 구매 허가증 등 3) 수출 계약서 4)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용도 증명서 5) 보증서류 (접수자의 공급받은 물품 사용 및 양도에 대한 보증서) 6) 기타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심사기관	상무부 및 지역별 상무국	상무부 (품목에 따라 국가원자에너지국, 중앙군사위원회, 의약품 관련 부서, 외교부, 국무원(중대사항 경우) 등)
절차	수출기업 성(省)급 상무부서에 신청 → 상무부에 전달 → 상무부 접수 여부 결정 심사 후 수출허가증 발급 및 수령	성(省)급 상무부서 통해 상무부 및 관할 기관 또는 부처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품목에 따라 국가원자에너지국, 중앙군사위원회, 의약품 관련 부서, 외교부, 국무원 등 신청서 접수 후 심사 (※ 국가안전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국무원 비준 필요) 심사 후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관련 허가증 발급 및 수령
심사 기간	상무부 30일 내 심사 * 의견수렴 기간 미포함, 기타 부서 의견 필요시 심사 기간 연장 가능	핵/생물/미사일 이중용도 : 15일 ~ 45일 * 국무원 허가 필요 시, 추가 심사 기간 소요, 제독이 용이한 화학품의 경우에는 약품감독관리 부서의 허가 필수

□ 중국의 추가 수출통제 품목 수출 현황

- * 이번 수출통제 품목은 HS10단위 27개이나, 본 자료의 수출금액은 수출통계 접근이 가능한 HS8단위 기준으로 해당되는 22개 품목을 합산, 일부 과다집계 가능성 있음
- 이번에 수출이 통제된 품목들의(HS 8단위 22개 품목) 2024년도 중국의 대 세계 수출액은 26.7억 달러이며, 이중 대미 수출액은 2.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7.7%, 대한민국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3.0%를 차지
 - 수출금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트리페닐 비스무트 등(HS29319000)으로 11.2억 달러이며, 동 품목의 5대 수출국은 미국, 인도, 한국, 네덜란드, 일본 순임
 - 이어서 카드뮴 텔루라이드 등(HS38180090) 6.6억 달러, 텅스텐 카바이드(HS28499020) 1.8억 달러, 비스무트 게르마나이트(HS28419000) 1.3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한국, 독일, 미국 등임
- 대한민국 수출액이 많은 품목은 트리페닐 비스무트 등(HS29319000) 1.0억 달러, 카드뮴 텔루라이드 등(HS38180090) 0.7억 달러, 텅스텐 카바이드(HS28499020) 0.6억 달러 등임

<주요 수출품목(단위 : 백만달러)>

HS코드	품목명	2024년 수출액			
		전체	미국	한국	5대 수출대상국
29319000	트리페닐 비스무트 등	1,123.1	125.8 (11.2)	104.7 (9.3)	미국, 인도, 한국, 네덜란드, 일본
38180090	카드뮴 텔루라이드 등	659.7	21.3 (3.2)	66.4 (10.1)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한국, 대만
28499020	텅스텐 카바이드	179.3	10.7 (6.0)	55.6 (31.0)	일본, 한국, 독일, 미국, 캐나다
28419000	비스무트 게르마나이트	133.3	5.4 (4.0)	37.8 (28.4)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미국
28259012	삼산화 텅스텐	100.9	0.8 (0.8)	40.1 (39.7)	한국, 일본, 이스라엘, 프랑스, 이탈리아
⋮					
합계(22개 품목)		2,665.2	204.1 (7.7%)	346.1 (13.0%)	

* ()안은 비중

2. 일부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 개요

-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 문제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기로 했으며, <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과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라 2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2025. 2. 4, 제1호 공고문)

*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추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이는 중미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언급

□ 추가관세 품목 : 석탄, 원유 등 총 80개 (HS 8단위 기준)

- 15% 부과 : 석탄(무연탄, 유연탄 등),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 10% 부과 : 원유, 농기계(제초기 등),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 등 72개

□ 중국의 대미국 추가 관세 품목 수입 현황

- 대미 추가관세가 부과된 품목들의(HS 8단위 80개 품목) 2024년 중국의 대세계 수입액은 4,392.6억 달러로 중국 총 수입액의 17.0%이며, 해당 품목의 대미 수입액은 139.5억 달러로 해당 품목 전체 수입의 3.2% 비중 차지

* 이번 추가 관세 품목의 대미 수입액이 총 대미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

-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중국의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HS27090000)로 3,234.3억 달러이며, 동 품목의 5대 수입국은 러시아, 사우디, 말레이시아, 이라크, 오만 순임 * 동 품목 관련 미국은 11위 수입상대국
- 이어서 액화천연가스(HS27111100) 443.2억 달러, 코킹 석탄(HS27011210) 185.6억 달러, 유연탄(HS27011290) 168.0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호주, 몽골, 러시아 등임
- 대미국 수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원유(HS27090000) 60.0억 달러, 내연지프 차량(2500~3000cc)(HS87032362) 27.5억 달러, 액화천연가스(HS27111100) 25.0억 달러 등임

- 대한민국 수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내연 세단(3000~4000cc)(HS87032411) 331.4만 달러, 기타 농산물 건조기(HS84193400) 262.3만 달러, 내연 왜건 (3000~4000cc)(HS87032413) 241.5만 달러 등으로 금액이 많지 않음

<대미 추가 관세 품목의 2024년 수입 (단위 : 백만달러)>

HS코드	품목명	2024년 수입액			
		전체	미국	한국	5대 수입대상국
27090000	원유	323,433.8	6,002.9 (1.9)	0	러시아, 사우디, 말레이시아, 이라크, 오만
27111100	액화천연가스	44,320.6	2,501.3 (5.6)	0	호주, 카타르, 러시아, 말련, 미국
27011210	코킹 석탄	18,563.4	1,863.3 (10.0)	0	몽골, 러시아, 캐나다, 호주, 미국
27011290	유연탄	16,798.1	32.5(0.2)	0	호주, 러시아, 인니, 몽골, 콜롬비아
87032362	내연 지프 차량 (2500~3000cc)	9,208.9	2,750.9 (29.9)	0	슬로바키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태국
⋮					
합계(80개 품목)		439,258.1	13,945.9 (3.2)	11.8 (0.0)	

※ 참고 <중국 정부 입장 * 상무부 대변인 발표(2025. 2. 4)>

-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는 WTO 규정 위반이자 전형적인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중국은 WTO 회원국과 함께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다자무역주의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국제무역 질서와 안정적인 발전을 지켜나가기 희망

3. 신뢰할 수 없는기업 리스트 추가

개요

-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미국 PVH그룹과 일루미나(Illumina, Inc.)를 추가한다고 발표 (2025. 2. 4, 2025년 4호 공고문)

- * (不可靠实体清单, Unreliable Entity List) 중국 상무부에서 2020년 9월 19일 발표 및 시행
- * 위 두 기업은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중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언급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및 중국 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관련 인원 등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 가능

※ 참고 <중국 정부 입장 * 상무부 대변인 발표(2025. 2. 4)>

- 중국은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극소수의 외국기업만 대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신중하게 처리해 왔으며,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외국기업은 염려할 필요 없음.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며, 법을 준수하는 외국기업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4. 반독점법 조사

□ 개요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월 4일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어 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
 - * 구글은 2006년 중국에 지사 설립 이후, 2010년 웹검색 서비스 사업은 중단됐으나, △광고·마케팅,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서비스, △해외 진출기업 대상 엑셀러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반독점법 위반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사업변경 등을 요구받을 수 있음
 - * 중국정부는 12월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 애플, 인텔 등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2 중국 언론 등 반응

- 미국 조치 대비 중국의 반격조치 긍정 평가, 중국의 추가 조치 여력과 협상 가능성 언급, 대미 협상력 강화 조치 필요성 등
 - 중국의 반격은 정당방위...더욱 유력한 반격조치를 취하여 미국의 잘못된 행위가 대가를 치르도록... (베이징일보, 2/4)
 - 중국의 10% 추가관세 부과 품목 72개 중 25개가 자동차 관련 품목으로 전체의 34% 이상 차지. 미국 자동차회사 이윤에 직접적인 타격(매일경제신문망, 2/5)
 - 중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대체 가능성이 낮아 10% 관세를 추가 부과해도 여전히 경쟁력 확보...현재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고 미국은 그다지 중요한 수출시장 아님(국무원발전연구센터 덩이판 연구원 2/4)
 - 중국이 미국산 석탄,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트럭 등에 추가관세 부과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 하락, 현 형세에서 새로운 수출시장 찾기 어려움... 중국은 추가로 타격할 여지 있음(중국청년망, 상하이경무대 잉편광 교수 2/5)
 - 미국산 LNG/석탄 15%, 원유 10%, 추가 관세는 중국시장에서 퇴출 의미. 미국은 ‘열 손가락을 상하게’ 한 반면, 중국은 ‘한 손가락을 잘랐다’ 누가 더 아프겠는가? (하오권투자연구기관 분석가 판나이싱, 2/5)
 -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반격조치 가능...미국의 무역전쟁 끝까지 상대...무역전쟁은 승자가 없기에 중국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공영이며, 대치와 충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님 (중국청년망, 대외경무대 추이판 교수2/5)
 - 외신은 중국 반격이 ‘상당히 절제된 것 같다’ 고 평가, 이는 미국에 신호를 보내 되...양국에 협상시간 제공하고 여지 남긴 것...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일시 온건히 대응했지만, 사태의 발전은 미국의 다음 정책에 달려 있다고 지적(관찰자망, 2/4)
 - 미국 관세정책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여 협상력 높여야...상품/기업 제재 리스트 확대, 수입품에 대한 모니터링/분석 강화,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신속 착수 등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미 협상력 높여야...(아오카이증권 루어즈형수석이코노미스트, 2/3)

<붙임 1>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상무부 · 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10호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물품수출통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핵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

1. 텅스텐 관련 품목

(1) 1C117.d . 텅스텐 관련 소재

- 1.1 파라텅스텐산암모늄 (HS 코드: 2841801000)
- 1.2 텅스텐 산화물 (HS 코드: 2825901200, 2825901910, 2825901920)
- 1.3 1C226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탄화 텅스텐 (HS 코드: 2849902000)

(2) 1C117.c . 다음 모든 특성을 갖춘 고체 텅스텐

2.1 다음 특성을 갖춘 고체 텅스텐 (입자 및 분말 형태 제외)

- ① 1C226, 1C241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텅스텐 및 텅스텐 함량이 97% 이상(중량 기준)인 텅스텐 합금 (HS 코드 :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 ② 텅스텐 함량이 80% 이상(중량 기준)인 텅스텐-구리 합금 (HS 코드: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 ③ 텅스텐 함량이 80% 이상(중량 기준)이고 은 함량이 2% 이상인 텅스텐-은 합금 (HS 코드 : 7106919001, 7106929001)

2.2 기계로 다음과 같은 제품을 가공 가능할 수 있는 경우

- ① 직경 120mm 이상, 길이 50mm 이상의 원통형 제품
- ② 내경 65mm 이상, 벽 두께 25mm 이상, 길이 50mm 이상의 관형 제품
- ③ 크기 120mm × 120mm × 50mm 이상의 블록형 제품

(3) 1C004 다음 모든 특성을 갖춘 텅스텐-니켈-철 합금 (HS 코드: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혹은 텅스텐-니켈-동 합금(HS 코드: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 ① 밀도 17.5 g/cm³ 초과
- ② 탄성 한계 800 MPa 초과
- ③ 극한 인장 강도 1270 MPa 초과
- ④ 연신율 8% 초과

(4) 1E004, 1E101.b 항목 1C004, 1C117.c, 1C117.d 품목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자료 (공정 규격,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포함)

2. 텔루륨 관련 품목

- (1) 6C002.a. 금속 텔루륨 (HS 코드: 2804500001)
- (2) 6C002.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텔루륨 화합물 단결정 또는 다결정 제품 (기판 또는 에피택셜 웨이퍼 포함)

- 2.1 카드뮴 텔루라이드 (HS 코드: 2842902000, 3818009021)
- 2.2 카드뮴-아연 텔루라이드 (HS 코드: 2842909025, 3818009021)
- 2.3 카드뮴-수은 텔루라이드 (HS 코드: 2852100010, 3818009021)

(3) 6E002 항목 6C002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자료 (공정 규격,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등 포함)

3. 비스무트 관련 품목

(1) 6C001.a. 1C229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얇은 비스무트 금속 및 제품 (잉곳, 블록, 구슬, 입자, 분말 등의 형태 포함), (HS 코드: 8106101091, 8106101092, 8106101099, 8106109090, 8106901019, 8106901029, 8106901099, 8106909090)

(2) 6C001.b. 비스무트 게르마나이트 (HS 코드: 2841900041)

(3) 6C001.c. 트리페닐비스무트 (HS 코드: 2931900032)

(4) 6C001.d. 트리스(p-에톡시페닐)비스무트 (HS 코드: 2931900032)

(5) 6E001 항목 6C001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자료 (공정 규격,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포함)

4. 몰리브덴 관련 품목

(1) 1C117.b. 몰리브덴 분말: 미사일 부품 제조용 몰리브덴 함량 97% 이상(중량 기준), 입자 크기 $50\mu\text{m}$ 이하의 몰리브덴 및 합금 입자 (HS 코드: 8102100001)

(2) 1E101.b. 항목 1C117.b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자료 (공정 규격,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포함)

5. 인듐 관련 품목

(1) 3C004.a. 인듐 포스파이드 (HS 코드: 2853904051)

(2) 3C004.b. 트리메틸인듐 (HS 코드: 2931900032)

(3) 3C004.c. 트리에틸인듐 (HS 코드: 2931900032)

(4) 3E004 항목 3C004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자료 (공정 규격,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포함)

상기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 수출통제법> 및 <중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 조례>에 따라 국무원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본 공고문은 발표일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중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 리스트>에 동시에 업데이트됨

상무부 해관총서 2025년 2월 4일

〈붙임 2〉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에 관한 공고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에 관한 공고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5년 제1호

2025년 2월 1일,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중국산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미국 측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자국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 및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에 대해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품목의 세부 목록은 별첨 1에 명시함
2. 원유, 농업 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품목의 세부 목록은 별첨 2에 명시함
3. 본 공고에 명시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현행 적용 관세율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며, 기존의 해관 특정 관할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보세 및 감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번 추가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별첨 1 추가관세 15% 부과 품목(HS 8단위 8개)
별첨 2 추가관세 10% 부과 품목(HS 8단위 72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25년 2월 4일

〈붙임 3〉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PVH, 일루미나 포함 관련 공고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PVH, 일루미나 포함 관련 공고

2025년 제4호

국가 주권 및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 〈중국 국가안전법〉, 〈중국 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미국 PVH그룹 및 일루미나(Illumina, Inc.)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

위의 두 기업은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중국 기업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함.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상기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

동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못한 부분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규정〉에 따라 집행함

본 공고문은 발표일부터 시행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관리국 2025년 2월 4일